

제314회 임시회

2012.9.21(금)

#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2. 9. 21 (금)

산업경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유완백 의원 외 6명

나. 발의일자 : 2012년 8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12년 9월 4일

라. 상정일자 : 2012년 9월 11일

(제3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유완백 의원)

가. 제안이유

- 도내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미흡한 조문을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내 공공기관에 관한 용어정의의 명확화(안 제2조)
- 여성기업 지원 제한 조문 명확화(안 제4조)
- 5년마다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조문 신설(안 제5조의1)

### 3. 검토보고 요지

(산업경제전문위원 : 송장섭)

-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운용중인 조례의 일부 미흡한 조문을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공기관”이란 충청북도 및 소속 행정기관, 충청북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제1항과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여성기업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조의1(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한 방향과 목표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5. 여성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경제인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도지사는 제5조의1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제9조1항제5호 중 “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중 “투자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생 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투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서 충청북도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을 말한다.</p> <p>제4조(지원의 제한) ① 여성기업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같은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p> | <p>제1조(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br/>-----.</p> <p>1. (현행과 같음)</p> <p>2. “공공기관”이란 충청북도 및 소속 행정기관, 충청북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p> <p>제4조(지원의 제한) ① 여성기업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p> |

| 현 행   | 개 정 안  |
|---|--|
| <p>② 제1항에 의한 지원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p> <p>&lt;신 설&gt;</p> | <p>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p> <p>제5조의1(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활동과 여성기업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여성기업 육성 및 촉진을 위한 방향과 목표</li> <li>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기술 지원 등에 관한 사항</li> <li>3. 여성기업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li> <li>4. 국내·외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li> </ol> |

| 현행   | 개정안  |
|--|--|
|  | <p>5. 여성기업 홍보에 관한 사항</p> <p>6. 그 밖에 여성기업 육성과 여성경제인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p>   |
| <p>제6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연도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 <p>제6조(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도지사는 제5조의1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p>  |
| <p>제9조(지원사항) ① 도지사 및 투자기관의 장이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4. (생략)</p> <p>5. 그 밖에 도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과 관련된 시책 추진에 있어서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는 각종 시책</p> | <p>제9조(지원사항) ① -----<br/> <del>공공기관</del>-----<br/> -----<br/> -----<br/> 1. ~ 4. (현행과 같음)</p> <p>5. ----- <del>공공기관</del>-----<br/> -----<br/> -----<br/> -----</p> |
| <p>제11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 ② (생략)</p>   | <p>제11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지도) ① ~ ② (현행과 같음)</p>   |



| 현행  | 개정안   |
|---|---|
| <p>③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군 및 투자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p> | <p>③ -----<br/>-----<br/>---- 공공기관 -----<br/>-----.</p> |

# 관 계 법 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8.3>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9.2.5]

##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여성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①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
2.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3.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7.25>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가.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